

## 차 례

2010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및 정책과제 .....	2
저출산 정책 예산 현황 및 정책 과제 .....	31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기초장애연금 대안의 쟁점 비교 및 분석 .....	44

# 2010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및 정책과제

# 목 차

I. 2010년 재정여건 및 정부예산안 .....	1
II. 2010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분석 .....	4
1. 2010년보건복지가족부 재정 규모 .....	5
2.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개요 .....	6
III. 보건복지 부문별 예산안 .....	7
1. 기초생활보장 .....	7
2. 노인복지 .....	10
3. 장애인복지 .....	12
4. 아동 및 청소년복지 .....	13
5. 공적연금 .....	15
6. 보육 .....	16
7. 가족 및 여성 .....	18
8. 사회복지일반지원 .....	20
9. 보건의료부문 .....	21
10. 국민건강보험 .....	24
IV.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 .....	26

# I . 2010년 재정여건 및 정부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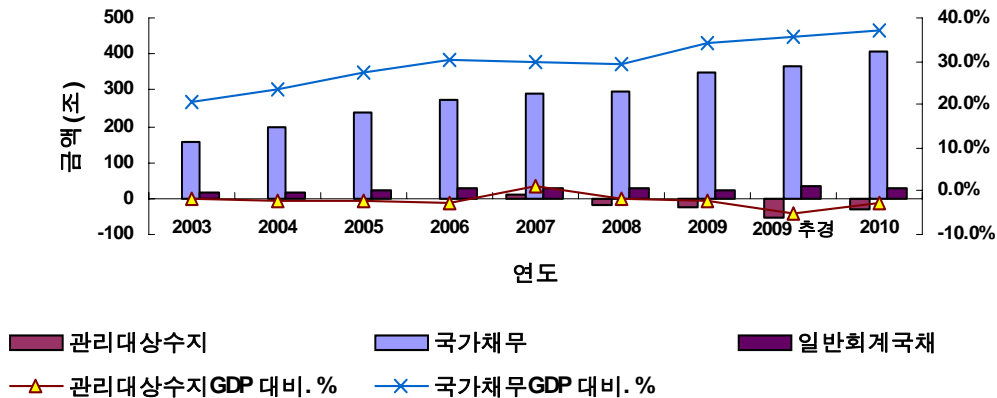
□ 2010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6% ~ 4.2%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한 2009년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MF(3.6%), 한국은행(3.6%), KDI(4.2%), 한국경제연구소(3.9%), 삼성경제연구소(3.9%), LG경제연구소(4.2), 현대경제연구소(3.9%)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2009년보다 악화되나 2013-2014년경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채무는 2010년 GDP대비 36.9% 수준으로 2009년 추경예산 대비 41.1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중기적으로 GDP대비 40%가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그림1>



□ 2010년도 재정 총수입은 전년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예산수입의 감소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으로 전망.

○ 기금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예산수입은 2.6% 감소하였음.

□ 경제가 회복국면에 이룸에 따라 총재정지출은 2009년 추경예산 수준보다는 3.4% 축소됨

<표1> 2010년도 재정규모 전망

(단위: 조원, %)

	09년 본예산	09년 추경예산	10년 예산안	본예산 증감율	추경예산 증감율
총수입	291.0	279.8	287.8	△1.1	2.9
- 예 산	196.9	185.7	191.9	△2.6	3.4
- 기 금	94.1	94.1	95.9	1.9	2
총지출 <sup>1)</sup>	284.5	301.8	291.8	2.5	△3.4
- 예 산	204.1	210.3	202.8	△0.6	△3.6
- 기 금	80.4	91.5	89.0	10.6	△2.8

□ 기금을 포함한 정부 총지출은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부문이 81조원 (27.76%), 일반 공공행정이 49.5조원 (17%), 교육부문이 37.8조원 (12.95%), 국방이 29.6조원 (10.14%)임.

- 보건복지부문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대비 6.4조 증가하여 총지출 항목중 규모로서는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6조 2,111억원 -> 8조 8,348억원)등을 포함한 주택부문 지출상승분과, 실업급여등 노동 부문의 지출상승분을 제외한 순수 보건복지부문 총지출은 8.91% 증가하여 보건복지부문 지출의 증가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나,
-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급여증가 (7조 6,745억원 -> 9조 780억원) 과 기타 실업급여 및 공적연금 급여 증가,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보험지원등 법정지출의 자연상승분에 따른 증가가 대부분임.

<표2> 분야별 자원배분

구 분	'09년	'10안	증가율
1. R&D	12.30 (4.32%)	13.60 (4.66%)	10.5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0 (5.69%)	14.40 (4.93%)	△10.92)
3. SOC	24.70 (8.68%)	24.80 (8.50%)	0.3

4. 농림수산물	16.90 (5.94%)	17.20 (5.89%)	2.1
5. 보건·복지	74.60 (26.22%)	81.00 (27.76%)	8.6
6. 교육	38.20 (13.43%)	37.80 (12.95%)	△1.2 <sup>3)</sup>
7. 문화·체육·관광	3.50 (1.23%)	3.70 (1.27%)	7.8
8. 환경	5.10 (1.79%)	5.40 (1.85%)	5.1
9. 국방(일반회계)	28.50 (10.02%)	29.60 (10.14%)	3.8
10. 통일·외교	3.00 (1.05%)	3.40 (1.17%)	14.7
11. 공공질서·안전	12.30 (4.32%)	12.90 (4.42%)	4.3
12. 일반공공행정	48.60 (17.08%)	49.50 (16.96%)	1.8
총지출	284.50	291.80	2.5

1) 본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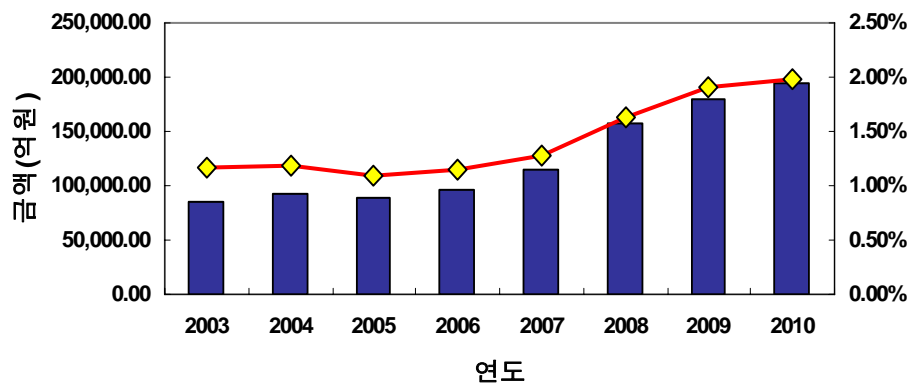
2)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제외시 6.4% 증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6.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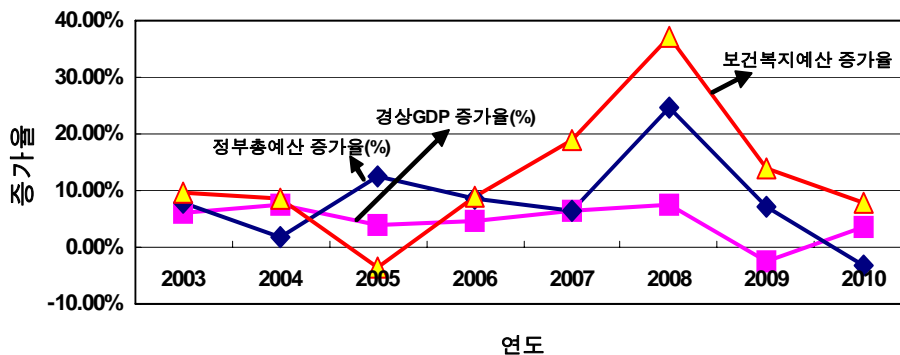
## Ⅱ. 2010 보건복지 예산안분석

□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을 중심으로 본 보건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으며, 증가율에 있어서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왔음.

<그림2>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추이



<그림3>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증가율 추이



## 1.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재정규모

-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규모는 총 31조645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2조 7,023억원 (9.5%)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 대비 1조 4,278억원 (4.8%) 증가하였음.
  - 예산은 일반회계가 19조 4,045억원, 특별회계가 2,810억원으로 총 19조 4,04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11조6,600억이 편성되었음.
  
- 예산은 2009년 본예산대비 9,690억원 (5.3%) 증가하였고, 추경예산대비 3,055억원 (1.5%) 감소하였음.
  - 예산증가는 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포함되는 보육부문 (2조 876억원, 22.1%),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노인부문 (2,783억원, 9%), 장애수당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부문 (1,012억원, 19%), 건강보험 지원 부문 (1조 4,183억원, 3.4%)에서 발생함.
  - '09년 본예산 대비 예산이 감소한 부문은 아동 및 청소년 부문, 가족 및 여성 부문이며, 보건부문에서는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 부문과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사업 부문등임.
  
- 기금은 '09년 계획대비 1조 7,333억원(17.5%) 증가한 11조 6,600억원으로, 이는 주로 국민연금기금이 전년대비 1조 4,814억원 (18.1%), 증가한 데 기인함.
  -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지급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급여가 연금형태로 지급되므로 성숙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급여지출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현상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09년 대비 1,008억원(6.2%) 증가한 1조 7,395억원으로 이는 주로 국민건강보험지원 증가에 따른 것임.
    - 국민건강보험 지원: 약 368억원 (3.6%) 증가한 1조 631억원
    - 산모건강관리사업: 약 244억원 (133.7%) 증가한 426억원



- 응급의료기금은 '09년 대비 1,350억원(345.0%) 증가한 1,741억원이나, 이는 사업비의 증가보다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이관된 사업으로 인한 급증임.
- 청소년육성기금은 '09년 대비 162억원(21.4%) 증가한 922억원임.

**<표3>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09년 예산	09년 추경예산	10예산	본예산 증감	추경예산		
					증감율 (%)	증감	증감율 (%)
<b>총지출</b>	283,622	296,367	310,645	27,023	9.5	14,278	4.8
• 예산	184,355	197,100	194,045	9,690	5.3	△3,055	△1.5
일반회계	180,155	192,706	191,235	11,080	6.2	△1,471	△0.8
특별회계	4,200	4,394	2,810	△1,390	△33.1	△1,584	△36.0
• 기금	99,267	99,267	116,600	17,333	17.5	17,333	17.5
건강증진기금	16,387	16,387	17,394	1,007	6.1	1,007	6.1
국민연금기금	81,729	81,729	96,543	14,814	18.1	14,814	18.1
응급의료기금	391	391	1,741	1,350	345.3	1,350	345.3
청소년육성기금	760	760	922	162	21.3	162	21.4

## 2.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 개요

-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분야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을 살펴 보면, 기초생활보장부문 약 7조 3천억원, 노인, 장애인등 지원이 약 4조 3천억원, 건강보험이 약 4조 3천억원, 보육이 약 2조 2천억원등으로 계획되어 있음.
- 노인분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분은 약 3조4천억원이며, 장애인은 약 65백억원, 아동 및 청소년은 약 1천 6백억원으로 계획되었음.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 가장 큰 부문은 보육·가족 및 여성(약 3조 2천 원), 노인,장애인등 지원부문 (약 2조8천억원), 건강보험 (약 4조3천억원) 순임.

<표4> 2010년 분야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09년 당초예산	09년 추경예산	10년 예산안	본예산대 비 증감액	증감 율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총계	18,605,936	19,899,843	19,737,416	1,131,480	6.1	△162,427	△0.8
총지출	18,435,501	19,709,983	19,404,514	969,013	5.3	△305,469	△1.5
사회복지	13,416,188 (72.7%)	14,568,392 (73.9%)	14,231,321 (73.3%)	815,133	6.1	△337,071	△2.3
-기초생활보장	7,135,490 (38.7%)	7,973,099 (40.4%)	7,292,933 (37.5%)	157,443	2.2	△680,166	△8.5
-노인·장애인 등 지원	4,073,527 (22%)	4,124,210 (20.9%)	4,340,616 (22.3%)	267,089	6.6	216,406	5.2
-공적연금	280 (0.001%)	280 (0.001%)	395 (0.002%)	115	41.1	115	41.1
-보육·가족 및 여 성	1,830,041 (9.92%)	1,838,316 (9.3%)	2,154,481 (11.1%)	324,440	17.7	316,165	17.2
-사회복지일반	376,850 (2.04%)	632,487 (3.2%)	442,896 (2.2%)	66,046	17.5	△189,591	△30.0
보 건	5,019,313 (27.2%)	5,141,591 (26%)	5,173,193 (26.6%)	153,880	3.1	31,602	0.6
-보건의료	841,593 (4.5%)	963,871 (4.8%)	853,642 (4.3%)	12,049	1.4	△110,229	△11.4
-건강보험	4,177,720 (22.6%)	4,177,720 (21.1%)	4,319,551 (22.2%)	141,831	3.4	141,831	3.4
내부거래	170,435	189,860	332,902	162,467	95.3	143,042	75.3
- 회계,계정간거래	98,413	117,838	118,910	20,497	20.8	1,072	0.9
- 기금 전 출금	72,022	72,022	213,992	141,970	197.1	141,970	197.1

### Ⅲ. 보건복지 부문별 예산안분석

#### 1. 기초생활보장 부문

□ 기초생활보장부문은 '09년 본예산(7.1조원) 대비 1,574억원(2%) 증가한 7조 2,92억원.

※ '09년 추경예산(7.4조원) 대비 680,166억원(8.5%) 감소.

○ '09년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는 자활지원(1,353억원), 정부양곡할인지원(948.6억원), 의료급여(815.9억원) 등에 기인한 것임.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은 유가상승등으로 인하여 '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10년 예산상 순감됨.

□ '09 추경에서는 경제위기하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시생계급여 (4,181억원)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용자 (639억원)를 도입하였으며, 긴급복지 확대하고, 의료급여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확대하였음. 이러한 사업의 종료와 축소로 인한 추경대비 '10년 예산 감소분 발생

○ 경제위기 대비 저소득층 생계보조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의 종료 및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사업들의 경우도 '09본예산 대비 대상자 수는 증가하거나 동일 수준 유지.

※ 긴급복지 지원대상 : ('09) 42 → ('09추경) 91 → ('10예산안) 54천건

## 가. 예산증가 주요 사업

□ 자활지원 사업은 '09년 본예산 대비 1,353억원(41.2%) 증가한 4,637억원으로 편성.

※ '09년 추경예산(3,944억원) 대비 692억원(17.6%) 증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적극적 탈수급 지원 방안인 희망키움통장 사업(249억원)등의 신규사업 도입.

－ 지원대상: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8만 가구

－ 지원규모: 월 30만원 수준 (2-3년간 총 1,000만원)

○ 자활지원사업중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42.5억원)은 원래 복권기금 사업이었던 것이 이전된 것임.

- 정부 양곡할인지원은 198억원('09추경) 대비 1,1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농·식품부(양곡관리특별회계)사업이 복지부의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 (931억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증가 항목으로 보기 어려움.
- 의료급여는 전년 본예산(3.4조원) 대비 815억원(2.4%) 증가
  - ※ '09년 추경예산(3.5조원) 대비 104억원(0.3%) 감소.
  - 추경예산 대비 의료급여는 기본진료비 지원대상 증가, 기본진료비, 인건비의 상승, 암환자 본인부담금 완화 등 보장성 강화등 예산증가 요인이 있으나 재정절감분이 3,039억원으로 예산감소
    - ※ 지원대상자: 1,738 (추경) → 1,745천명

#### 나. 예산감소 주요 사업

-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경제위기시에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발생함. '10년은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09년 본예산(3.3조원) 대비 649억원(1.9%) 감소
  - 기초생활급여의 감소는 주거급여(920억원),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902억원)이 감소한 것이 기인.
-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추경시 지원대상과 동일.
  - '10년 예산안에서는 1인당 급여액에서 가구별 급여액으로 예산편성 방식의 변경되었고, 전달체계 개선으로 인한 재정절감분(307억)이 고려되었음.
    - ※ 지원대상 : ('09) 1,500천명 → ('09추경) 1,546천명 → ('10안) 1,546천명 /920천 가구
- 생계급여는 본예산대비는 증가하였으나, 추경대비 감소 지원대상은 추경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
  - ※ 지원대상 : ('09)1,586천명 → ('09추경)1,632천명 → ('10)1,632천명

<표6>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안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b>총계</b>		7,135,490	7,973,099	7,292,933	157,443 (2%)	△337,071 (△2.3%)
<b>기초생활급여</b>		3,336,886	3,432,686	3,271,960	△64,926 (△1.9%)	△680,166 (△8.5%)
생계급여		2,446,001	2,519,251	2,449,192	3,191 (0.13%)	△70,059 (△2.8%)
주거급여		654,880	673,942	562,824	△92,056 (△14.1%)	△111,118 (△16.5%)
교육급여		110,475	110,475	120,406	9,931 (9%)	9,931 (9%)
해산·장제급여		13,475	13,475	15,350	1,875 (14%)	1,875 (14%)
정부양곡할인지원		16,343	19,831	111,203	94,860 (580%)	91,372 (461%)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신규)		-	-	10,804	10,804 (순증)	10,804 (순증)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90,291	90,291	-	△90,291 (순감)	△90,291 (순감)
기초생활보장관리		5,421	5,421	631	△4,790 (△88.4%)	△4,790 (△88.4%)
기초보장관리단 확대운영(신규)		-	-	1,550	1,550 (순증)	1,550 (순증)
<b>의료급여</b>		3,418,631	3,510,631	3,500,225	81,594 (2.4%)	△10,406 (△0.3%)
<b>긴급복지</b>		51,532	153,312	52,912	1,380 (2.7%)	△100,400 (△65.5%)
<b>자활지원</b>		328,441	394,470	463,756	135,315 (41.2%)	69,286 (17.6%)
<b>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b>		-	63,900	4,080	4,080 (순증)	△59,820 (△93.6%)
<b>한시생계구호</b>		-	418,100	-	-	- (순감)

## 2. 노인복지

□ 10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09년 본예산(3.1조원) 대비 2,782억원(9%) 증가한 3조 4,039억원.

※ '09년 추경예산(3.15조원) 대비 2,505억원(7.9%) 증가.

-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포함한 노인복지지원(2,538억원, 10%)과 노인돌봄서비스(368억원, 71%),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사업(584억원, 18%) 증가로 기인.
- 기초노령연금 지급(2,538억원)이 증가액의 85.5% 이상으로, 법정지출의 자연증가분에 의한 것임.
  - ※ 대상자: 363 → 371만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예산은 '09년 본예산(3,283억원) 대비 584억원(18%) 증가.
  - 이는 대상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분 지원이 전년 대비 3,303억원(62.3%) 증가한 것에 기인.
    - ※ 대상자: 18 → 32.5만명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예산은 '09년 대비 367억원(71%) 증가.
  - 이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원 확충과 종사자들의 4대 보험료와 교육비 등 운영비의 증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지원대상자 증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기인.
- 노인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은 '09년본예산(973억원) 대비 447억원(45.9%) 감소하여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7> 노인복지부문 예산안**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b>총계</b>		3,125,696	3,153,416	3,403,957	278,261 (9%)	250,541 (7.9%)
<b>노인생활안정</b>		2,667,770	2,695,490	2,964,431	296,661 (11%)	268,941 (9.9%)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2,470,008	2,470,008	2,723,889	253,881	253,881

노인복지지원				(10%)	(10%)
사할린한인지원	8,960	8,960	6,273	△2,687 (△30%)	△2,687 (△30%)
노인관련기관지원	5,253	5,253	5,041	△212 (△4.0%)	△212 (△4.0%)
노인돌봄서비스	52,141	52,141	88,888	36,747 (71%)	36,747 (71%)
노인일자리지원	131,408	159,128	140,340	8,932 (7%)	△18,788 (△11.8%)
<b>노인의료보장</b>	<b>425,789</b>	<b>425,789</b>	<b>439,526</b>	<b>13,737 (3%)</b>	<b>13,737 (3%)</b>
노인장기요양보힘지원	328,399	328,399	386,884	58,485 (18%)	58,485 (18%)
노인요양시설확충	97,390	97,390	52,642	△44,748 (△45.9%)	△44,748 (△45.9%)
<b>장사시설확충</b>	<b>32,137</b>	<b>32,137</b>	<b>30,340</b>	<b>△1,797 (△5.6%)</b>	<b>△1,797 (△5.6%)</b>
장사시설	32,137	32,137	30,340	△1,797 (△5.6%)	△1,797 (△5.6%)

### 3. 장애인복지

□ '10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09년 본예산(5,463억원) 대비 1,011억원(19%) 증가한 6,745억원.

※ '09년 추경예산(5,565억원) 대비 910억원(16.3%) 증가.

○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가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을 포함한 저소득장애인지원(131억원, 177%)과 장애수당(478억원, 15%), 장애인사회활동지원(427억원, 30%) 증가에 기인.

□ 장애수당 사업은 '09년 본예산(3,3132억원) 대비 478억원(15%) 증가.

○ 장애수당지급의 예산이 삭감(1,078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7월부터 시행될 중증장애인연금의 신규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운영비가 기인.

※ 중증장애인연금

－ 지원대상:최저생계비 150% 이사 소득계층, 33만명

－ 지원규모: 1,474억원, 개인당 월 15/14/9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

- 장애수당: 1,090억원('10.1-6월)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확충은 전년 본예산(404억원) 대비 92억원(22.9%) 감소.

○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101억원, 36.4%)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2억원, 18.3%)의 예산 삭감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감소.

<표8>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안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b>총계</b>		546,341	556,539	647,540	101,199 (19%)	91,001 (16.3%)
<b>장애인생활안정지원</b>		529,307	539,505	630,376	101,069 (19%)	90,381 (16.8%)
	장애수당	313,246	313,246	361,061	47,815 (15%)	47,815 (15%)
	저소득장애인지원	7,454	7,454	20,642	13,188 (177%)	13,188 (177%)
	장애인자립자금융자	2,457	2,457	3,239	782 (32%)	782 (32%)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42,943	144,943	185,657	42,714 (30%)	40,714 (28%)
	장애인복지시설확충	40,423	46,423	31,159	△9,264 (△22.9%)	△15,264 (△32.9%)
	장애인단체 지원	9,131	9,131	10,564	1,433 (16%)	1,433 (16%)
	장애인일자리지원	13,653	15,851	18,054	4,401 (32%)	2,203 (14%)
<b>장애인재활지원</b>		17,034	17,034	17,164	130 (1%)	130 (1%)
	장애인직업재활지원	370	370	500	130 (35%)	130 (3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6,664	16,664	16,664	-	-

#### 4. 아동 및 청소년복지

□ 아동 및 청소년 예산은 '09년 본예산(1,823억원) 대비 204억원(43.6%) 감소한 1,619억원.



※ '09년 추경예산(1,932억원) 대비 313억원(16.2%) 감소.

- 아동시설 지원예산은 전년 본예산(552억원) 대비 438억원(56.6%) 감소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 (421억원) 이 종료되었고, 아동시설 확충사업이 전년대비(66억원) 대비 38억원(50.8%) 감소

- 반면, 아동복지지원은 전년 본예산(966억원) 대비 261억원(27%) 증가.
  -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와 지역아동센터등 방과 후 활동지원의 증축된데 기인.

※드림스타트 : 09년 : 75개소, 225억원 → '10년 : 100개소, 225 → 301억원

- 아동청소년정책부분 예산 삭감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른 부분이 많음.
  - 아동청소년 행사지원 (3억),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10억)등

### <표9> 아동 및 청소년복지부문 예산안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b>총계</b>		182,389	193,279	161,895	△20,494 (△43.6%)	△31,384 (△16.2%)
<b>요보호아동보육육성</b>		77,525	78,625	33,674	△43,851 (△56.6%)	△44,951 (△57.2%)
	아동시설 지원	55,228	56,328	11,348	△43,880 (△79.5%)	△44,980 (△79.9%)
	확대·실종아동보호 지원	5,091	5,091	4,729	△362 (△7.1%)	△362 (△7.1%)
	가정입양지원	9,280	9,280	9,307	27 (0.3%)	27 (0.3%)
	가정위탁 지원	1,356	1,356	1,720	364 (26.8%)	364 (26.8%)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6,570	6,570	6,570	-	-
<b>아동복지지원</b>		96,607	106,397	122,723	26,116 (27%)	16,326 (15.3%)

방과 후 활동지원	74,062	83,852	92,614	18,552 (25%)	8,762 (10.4%)
드림스타트지원	22,545	22,545	30,109	7,564 (33.6%)	7,564 (33.6%)
아동청소년정책	5,853	5,853	3,818	△2,035 (△34.8%)	△2,035 (△34.8%)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증진	2,404	2,404	1,680	△724 (△30.1%)	△724 (△30.1%)

## 5. 공적연금

□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전년도 국민연금 급여지출보다 1조 4,035억원 증가한 9조 780억원으로, 이는 주로 연금 급여 수급자수 및 평균 급여액 수준이 증가한데에 기인함.

○ 특례노령연금제도의 시행만료로 인해 2010년에는 반환일시금 수급자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환일시금 수급자 : 148천명('09년) ⇒ 289천명('10년)

□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지급이 아직 초기단계이고(완전노령연금급여지출이 2008년 처음 발생) 대부분의 급여가 연금형태로 지급되므로 성숙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급여지출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일반회계 운영비는 '09년 대비 1억1500만원 증가한 3억9500만원.

<표11> 국민연금 부문 예산안

(백만원)

국민연금 급여지출	'09	'10	증가(B-A)
노령연금 급여지급	5,863,405	6,869,907	1,006,502
반환일시금 지급	489,600	784,374	294,774
유족연금 급여지급	907,600	986,748	79,148
장애연금 급여지급	413,900	437,000	23,100
<b>소계</b>	<b>7,674,505</b>	<b>9,078,029</b>	<b>1,403,524</b>
<b>일반회계</b>			
국민연금제도운영	280	395	115 (41.1%)
<b>소계</b>	<b>280</b>	<b>395</b>	<b>115</b> <b>(41.1%)</b>
<b>내부거래 (국민연금기금 전출금)</b>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	19,194	10,000	△9,194 (△47.9%)
출산크레딧 급여	2	2	0 (0%)
신용회복대여사업 이차보전	562	177	△385 (△68.5%)
<b>소계</b>	<b>19,758</b>	<b>10,179</b>	<b>△9,579</b> <b>(△48.5%)</b>

## 6. 보육

□ 보육부문 예산은 09년 본예산(1조7,104억원) 대비 3,771억원(22.1%)증가한 2조 876억원으로, 예산의 증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증가가 주된 요인임.

○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전년(1조2,821억원)대비 3,500억원(27.3%)증가한 1조 6,322억원.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보육료 지원 아동 : '09) 813천명 → '10) 870천명

※ 소득 70% 초과하는 민간시설 이용 영아에도 기본보육료 지원(130천명)

※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지원 대상 : '09) 610천명 → '10) 761천명

- 소득하위 50%의 만0~4세아, 소득하위 70%의 만5세아 및 둘째아 이상 아동, 장애아동 등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
- 소득하위70%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

#### □ 201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 0~4세아 차등보육료 : 1,368,880백만원(657천명→724천명, 83천명→130천명)
- 만5세아보육료 : 121,753백만원(140천명→122천명)
- 장애아보육료 : 46,271백만원(16천명→15.6천명)
- 두자녀 보육료 : 85,641백만원(110천명→103천명)
- 맞벌이가구 보육료 (신규) :9,659백만원(18천명)

□ 시설이미용아동 양육지원은 전년(323억원)대비 332억원(102.7%)증가한 656억원

- 지원대상은 차상위 0~1세, 114천명이며, 지원단가는 10만원/인·월(전년 동)

□ 보육부문 중 예산 삭감 사업은 보육시설기능보강과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임.

○ 보육시설기능보강은 전년 본예산(211억원)대비 117억원(55.4%)감소한 94억원

- 보육시설확충 : 13,198→8,395백만원
- 환경개선비지원 : 600개소 7,657백만원→567개소 5,767백만원
- 장애아보육 환경개선 : 42개소, 293백만원→40개소 276백만원

○ 보육인프라구축은 전년(163억원) 대비 40억원(24.9%)감소한 122억원

<표12> 보육 예산안 현황

(백만원)

세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총계	1,710,430	1,710,430	2,087,609	377,179 (22.1%)	377,179 (22.1%)
보육돌봄서비스 등	339,883	339,883	349,528	9,645 (2.8%)	9,645 (2.8%)
영유아보육료지원	1,282,168	1,282,168	1,632,204	350,036 (27.3%)	350,036 (27.3%)
보육시설기능보강	21,147	21,147	9,438	△11,709 (△55.4%)	△11,709 (△55.4%)
보육인프라구축	16,348	16,348	12,281	△4,067 (△24.9%)	△4,067 (△24.9%)
보육시설평가인증	3,401	3,401	3,401	-	-
보육시설지원	15,093	15,093	15,093	-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2,390	32,390	65,664	33,274 (102.7%)	33,274 (102.7%)

## 7. 가족 및 여성

□ '10년도 가족 및 여성 예산은 '09년 본예산(1,196억원) 대비 527억원(79.8%) 감소한 669억원이나, 이는 사업이 기타 기금등으로 이관됨에 기인한 바 커서 실질적인 예산의 삭감이라 보기 어려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사업(506억원), 국제결혼중개업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억8천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언어발달지원 (4억 7천만원)등이 복권기금으로 이관

○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지원운영, 난임부부지원 지자체경상보조 및 모성건강지원 환경 조성사업은 모두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56억원('09)→ 225('09추경) → 201억원으로 추경대비 2.4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일시·긴급 돌봄 서비스의 감소로 인한 것임.

반면 영아정기돌봄서비스는 신규로 도입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자지단체경상보조와 총합하였고, 지원대상이 전년 58,698명에서 '10년 55,763명으로 줄어듦.

<표13>가족 및 여성 예산안 현황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b>총계</b>		119,613	127,886	66,872	△52,741 (△79.8%)	△61,014 (△47.7%)
<b>가족기능강화</b>		77,447	85,719	35,563	△41,884 (△54.1%)	△50,157 (△58.5%)
	한부모가족지원	53,931	53,931	3,620	△50,311 (△93.3%)	△50,311 (△93.3%)
	가족친화환경 조성	904	904	1,008	104 (11.5%)	104 (11.5%)
	아동양육지원	15,644	22,540	20,147	4,503 (28.8%)	△2,393 (△10.6%)
	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지 원	5,828	6,125	8,276	2,448 (42%)	2,151 (35.1%)
	건강가정 지원	181	181	-	△181 (순감)	△181 (순감)
	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485	485	2,512	2,027 (417.9%)	2,027 (417.9%)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473	1553	-	△473 (순감)	△1,553 (순감)
<b>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b>		42,166	42,167	31,309	△10,857 (△25.7%)	△10,857 (△25.7%)
	산모신생아도우미	25,776	25,776	24,485	△1,291 (△5.0%)	△1,291 (△5.0%)
	모자보건사업	12,335	12,335	-	△12,335 (순감)	△12,335 (순감)
	저출산대응인구정책(일반)	724	724	693	△31 (△4.3%)	△31 (△4.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관리	3,332	3,332	6,131	2,799 (84%)	2,799 (84%)

## 8. 사회복지일반 지원

□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09년 본예산(3,768억원) 대비 660억원(17.5%) 증가한 4,429억원

※ '09년 추경예산(6,324억원) 대비 510억원(36.8%) 증가.

○ 사회복지일반 예산의 증가는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63억원, 45.7%) 증가와 사회복지무제도도입(264억원, 428.8%)에서 두드러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09년 추경예산(1,289억원) 대비 131억원(10.2%) 감소. 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95억원, 7.9%)와 민간경상보조(33억, 45.8%) 감소와 사회복지서비스선도사업의 종료에 기인.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감소(82억원, 31%)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감소(54억원, 90%)로 인한 것으로, 이는 '09년 보건복지콜센터 기능확대 구축(32억원)과 시군구 콜센터 설치(11억원) 사업 완료로 해당예산이 삭감

□ 일반보건복지행정 지원 중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이관되면서 '노인돌보미사업'에 통합되어 예산이 삭감.

<표14> 사회복지일반부문 예산안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b>총계</b>		376,851	632,490	442,895	66,044 (17.5%)	△189,594 (△30.0%)
<b>사회복지기반조성</b>		138,573	394,061	189,582	51,010 (36.8%)	△204,478 (△51.9%)
	사회복지사업지원	17,117	217,117	12,001	△5,116 (△29.9%)	△205,116 (△94.5%)
	복지사업평가	5,624	5,624	6,498	874 (15.5%)	874 (15.5%)
	보건복지콜센터	3,520	3,520	4,261	741 (21.1%)	741 (2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9,462	128,950	115,793	36,331 (45.7%)	△13,157 (△10.2%)

사회복무제도도입	6,171	6,171	32,630	26,459 (428.8%)	26,459 (428.8%)
사회복지전달체계	26,679	32,679	18,399	△8,280 (△31%)	△14,280 (△43.7%)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238,279	238,429	253,313	15,034 (6.3%)	14,884 (6.2%)

## 9. 보건의료부문

- 보건 분야 예산의 규모는 '09년 본예산(8,415억원) 대비 120억원(1.43%) 증가한 8,536억원.
  - 질병관리본부지원(569억원, 130.6%), 보건산업육성(545억원, 180%) 및 생명과학연구지원(351억원, 34.3%) 사업 예산 증가에 기인.
- 생명과학연구지원은 '09년 본예산(1,020억원) 대비 351억원(34.3%) 증가한 1,371억원으로 책정.
  - 생명과학연구지원 사업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해 1,371억원을 사용함으로 충북 오송에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추진함.
- 질병관리본부지원 부문의 예산은 '09년 본예산(436억원) 대비 130.6%(1,006.5억원) 증가.
  - 이는 H1N1 및 전염병 관리사업 및 질병관리본부 업무정보화, 오송 이전 연구시설·장비 인프라구축, 질병관리본부 정보시스템 오송 이전과 같은 신규사업의 도입에 기인.
  - 질병관리본부지원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6,310% 증가한 55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감염병병원체 확인진단과 감염성질환 유행예측사업을 실시하며 항바이러스제를 추가적으로 비축하도록 함.
- 보건산업육성부문의 예산은 전년 본예산(302억원) 대비 545억원(180.1%) 증가한 847억원이 예산으로 편성.



- 10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감율을 차지하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98억원, 1003.4%)의 증가에 기인.
  - 신규 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341억원) 과 그린코스메틱 육성 인프라구축(40억원) 및 신소재·신기술 R&D 지원(60억원)의 도입에 기인.
- 반면,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은 '09년 본예산(1,654억원) 대비 536억원(32.4%) 감소.
- 장기기증자 보조금지급 및 홍보와 장기구득기관 운영지원이 포함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50.4% 증가하여 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육성(189억원, 42.2%), 지방대병원 특화·육성(322억원, 31.5%)의 예산 감소와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사업의 종료로 인한 것임.
  -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편성된 예산 감소는 지역별 균등한 보건의료 서비스기관의 입지와 의료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저해할 수도 있음.
  - 지방대병원 특화·육성(322억원, 31.5%)의 예산 감소는 노인보건의료센터 사업이 종료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 치료실,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관리 센터가 응급의료기금으로의 이관 된 것으로, 지방대병원 특화·육성을 위한 지출의 감소라 보기는 어려움.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09년 본예산(1,751억원) 대비 400억원(22.9%) 감소한 1,350억원으로 책정.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중 취약계층의료지원(446억원, 27.6%)의 감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단위사업 변경으로 인함.
  - 취약계층의료지원의 예산 감소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저소득장애인 지원-장애인보장구구입 지원 예산과 통합되어 저소득장애인 지원-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106억원의 감소가 발생한 것에 기인.

<표15> 보건의료부문 예산안

		(백만원)				
부문	세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b>총계</b>		841,593	841,593	853,642	12,049 (1.43%)	12,049 (1.43%)
<b>1. 공공보건의료확충</b>		165,481	174,580	111,835	△53,646 (△32.4%)	△62,746 (△37.9%)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지원	3,717	3,717	9,308	5,591 (150.4%)	5,591 (150.4%)
	국제적십자위원회지원	313	313	325	12 (3.8%)	12 (3.8%)
	지방의료원등 육성	44,818	44,818	25,912	△18,906 (△42.2%)	△18,906 (△42.2%)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102,554	102,554	70,290	△32,264 (△31.5%)	△32,264 (△31.5%)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14,079	14,079	-	△14,079(순감 )	△14,079(순감)
<b>2. 보건산업육성</b>		30,275	37,005	84,787	54,512 (180.1%)	47,782 (157.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지원 (R&D)	9,975	9,975	13,129	3,154 (31.6%)	3,154 (31.6%)
	보건산업육성지원	17,764	17,764	70,138	52,374 (294.8%)	52,374 (294.8%)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1,085	1,085	1,521	436 (40.2%)	436 (40.2%)
<b>3. 생명과학연구지원</b>		102,049	102,049	137,168	35,119 (34.4%)	35,119 (34.4%)
<b>4. 한의학 연구 및 정책개발</b>		29,378	29,378	9,717	△19,661 (△66.9%)	△19,661 (△66.9%)
<b>5. 국민건강 생활실천</b>		150	150	730	580 (386.7%)	580 (386.7%)
<b>6. 암 및 희귀질환 지원</b>		49,196	49,196	49,755	599 (1.1%)	599 (1.1%)
<b>7. 정신질환 관리</b>		6,794	6,794	3,442	△3,352 (△49.3%)	△3,352 (△49.3%)
<b>8. 구강보건사업지원</b>		590	590	1,440	850 (144.1%)	850 (144.1%)
	치과의료체계화	590	590	1,440	850 (144.1%)	850 (144.1%)
	치과의료기관평가	90	90	190	100 (111.1%)	100 (111.1%)
	장애인구강진료 센터	500	500	1,250	750 (150%)	750 (150%)
<b>9. 보건의료서비스지원</b>		175,110	175,110	135,070	△40,040 (△22.9%)	△40,040 (△22.9%)

전공의수련지원	2,137	2,137	1,920	△217 (△10.2%)	△217 (△10.2%)
국가시험원운영	1,076	1,076	960	△116 (10.8%)	△116 (10.8%)
보건의료체계화	2,306	2,306	4,219	1,913 (83%)	1,913 (8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축운영	7,044	7,044	9,129	2,085 (29.6%)	2,085 (29.6%)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6,900	6,900	-	△6,900 (순감)	△6,900 (순감)
신의료기술평가	623	623	1,612	989 (158.7%)	989 (158.7%)
취약계층의료지원	161,924	161,924	117,230	△44,694 (△27.6%)	△44,694 (△27.6%)
<b>10. 소록도 병원 지원</b>	<b>8,716</b>	<b>8,716</b>	<b>8,087</b>	<b>△629 (△7.2%)</b>	<b>△629 (△7.2%)</b>
<b>11. 질병관리본부지원</b>	<b>43,653</b>	<b>132,553</b>	<b>100,652</b>	<b>56,999 (130.6%)</b>	<b>△31,901 (△73.1%)</b>
<b>12. 기타</b>	<b>230,201</b>	<b>94,026</b>	<b>210,959</b>	<b>△19,242 (△8.3%)</b>	<b>116,933 (124.3%)</b>

## 10. 건강보험

□ 건강보험부문 예산은 '09년 본예산(4.1조원) 대비 3.4%(1,418억원) 증가한 4조 3,196억원임.

-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약 2조7천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에 따라 이의 14% 지원분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원이 '10년 과징금 예상세입액 107억원의 50%가 포함된 내역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10년 지출은 전년대비 368억원 증가한 106억원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상당액,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이내)

### <표16> 국민건강보험부문 예산안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	------	--------	-------------	------------	-------------------------	-----------------------------

<b>일반회계 총계</b>	<b>4,177,719</b>	<b>4,177,719</b>	<b>4,319,552</b>	<b>141,833</b> <b>(3.4%)</b>	<b>141,833</b> <b>(3.4%)</b>
<b>건강보험지원</b>	3,657,230	3,657,230	3,798,736	141,506 (3.9%)	141,506 (3.9%)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3,656,585	3,656,585	3,798,385	141,800 (3.9%)	141,800 (3.9%)
보험정책 사업관리	187	187	144	△43 (△23.0%)	△43 (△23.0%)
독립적 검토 절차 지원	221	221	200	△21 (△9.5%)	△21 (△9.5%)
건강보험심판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237	237	7	△231 (△97%)	△231 (△97%)
<b>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b>	520,221	520,221	520,574	353 (0.1%)	353 (0.1%)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520,221	520,221	520,574	353 (0.1%)	353 (0.1%)
<b>사회보험징수 통합</b>	268	268	242	△26 (△10.0%)	△26 (△10.0%)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268	268	242	△26 (△10.0%)	△26 (△10.0%)
<b>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지원</b>	<b>1,026,246</b>	<b>1,026,246</b>	<b>1,063,062</b>	<b>36,816</b> <b>(3.6%)</b>	<b>36,816</b> <b>(3.6%)</b>
<b>합계</b>	<b>5,203,965</b>	<b>5,203,965</b>	<b>5,382,614</b>	<b>178,649</b> <b>(3.4%)</b>	<b>178,649</b> <b>(3.4%)</b>

### Ⅲ.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

- 기초생활급여는 경제위기시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연증가분 발생하게 되나, '10년 예산안에서는 자격급여의 산출근거가 개인으로 산출되어 과다계상되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가구당 편성하여, 예산증가폭이 절감된 부분이 있음.
-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경우 소요예산은 완화 폭에 비례하여 증가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주거급여는 중소도시 전세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경우 최저주거비 미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 지역별·점유형태별 최저주거비를 바탕으로 주거급여를 차등지원할 경우 지역별 인구수의 차이, 자가·전세·월세간의 최저주거비 차이로 인하여 주거급여 예산은 증가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급여의 경우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고령화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중증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진료비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은 2008년 이후 5%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나, 국민연금법 제87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부담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국고보조에 대한 장기계획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각각 2001년과 1973년부터 급여부족분만큼 국고로 보전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 국고보조를 5%로 대폭 낮춘 것은 타공적연금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음.
  -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관리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나 장기계획없이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급여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 혹은 입양한자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군복무의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출산크레딧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국가: 30%, 국민연금기금: 70%)
- 이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10년에는 2백만원으로 미미한 금액이나, 출산크레딧제도가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2040년에는 약 8,404억원(경상가격)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기금의 부담은 6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임.
- 신용회복대여사업 이차보전은 국민연금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납부보험료의 50% 한도내에서 저리로 기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저금리로 인한 기금손실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함.
- '10년 예산안에서는 신용회복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177억원이 편성됨.
  - 국민연금수익률과 신용회복대여 이자율 간의 기회이익 손실 중 50%만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나머지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이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으로의 부담전가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예산의 자원배분은 대체적으로 소득 및 취업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고 장기요양보호관련 예산이 낮은 측면이 있음.

-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전년도의 경우 지방부담이 국고부담의 약 1.6배에 이르는 등 지자체 부담이 크며, 지자체 부담의 대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비용 부담임. ('09년 총 지자체 부담의 94.6%)
- 이는 지방이양된 노인시설운영지원사업의 수요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체한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이의 완화를 위하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금 (기타 의료수급권자에) 에 대한 국고부담의 증액 편성이 필요함.

□ 여성노동참여의 고취와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이상으로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학이후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비함.

-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예방적 서비스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취학이후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예산의 증가도 필요함.
- 보육부문 예산증가는 주로 보육료 지원의 대상확대에 따른 것이나,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 인적 자원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기대수준 증대 등으로 보다 전문화된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가족분야사업예산은 저소득층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금급여 프로그램 개발 등 포괄적인 지원에 예산이 집중되어야 하며,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부양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보편적인 가족정책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

□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과거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이 자립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직업·주거·의료·소득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예산에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소득보장 뿐 아니라, 향

후에는 직업재활, 주거보장, 의료보장에 대한 예산과 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개인에 대한 소득 보장 뿐 아니라 직업, 주거, 의료보장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의 의료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장기요양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대책이 부족한 현실임. 장애인 장기요양에 대한 제도의 도입과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함.
- 장애인 패러다임이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 생활시설 보다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룹홈(Group Home), 자립 홈의 양적 확대와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주택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이를 테면 임대 아파트 및 임대 주택의 공급에서 장애인 가정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 등이 있음.

□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제고하여 보건복지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분야의 예산 비율을 약 4%대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예산 증대를 통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부문에 증액되는 예산을 우선 배정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상당 비율이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순수하게 건강분야의 재원증대를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발굴이 필요함.
  - 아울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기보다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증진기금에서 순수하게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기금으로 운용되지 않고 통합재정에 속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음에 따라 급증하는 급여비 및 당기적자 발생등의 재정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여 정부 통합재정에 포함시켜야 함.
-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용양급여비용을 포함하여 '10년 약 3조 8천억원이 편성되었음.('09년 대비 3.9% 증가)
- 사회보험중 국고 지원액이 가장 크며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한 실정.

# 저출산 정책 예산 현황 및 정책 과제

## 2010년도 저출산 정책 예산 현황 및 정책 과제

### I. 2010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예산 현황

□ 2010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예산 규모

- 2010년 총 예산(안)은 12.4조원으로 2009년 11조원 대비 13.1% 증가
  - 정부 총지출 증가율(2.5%) 및 복지부 증가율(9.5%) 보다 높음
- 저출산 분야 2010년 예산은 5.96조원으로 2009년 4.77조원 대비 25.1%의 증가를 보임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안)	증 감	
					%
계		109,569	123,875	14,306	13.1
분야별	저 출 산	47,677	59,633	11,956	25.1
	고 령 화	46,768	49,718	2,950	6.3
	성장동력	15,096	14,459	-637	-4.2
	교육홍보	28	65	37	133.5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 내부자료

□ 연차별 재정 투입 현황

- 저출산 분야 예산은 2006년 2.1억원에서 2010년 6조원으로 약 3배 증가를 보임
- 제1차 기본계획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분야에 대하여 총 19.7억원 투입

구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예	계	예	계	예	계	예	계	예	계	예
	획	산	획	산	획	산	획	산	획	산	획	산
부문별	40.3	42.1	3.7	4.5	5.7	5.9	8.4	8.4	10.8	10.9	11.7	12.4
저출산	19.1	19.7	2.1	2.1	3.2	3.1	3.8	3.8	4.7	4.7	5.3	6.0
고령화	15.0	15.7	0.8	1.3	1.3	1.5	3.2	3.2	4.7	4.7	5.0	5.0
성장동력	6.2	6.7	0.8	1.1	1.2	1.3	1.4	1.4	1.4	1.5	1.4	1.4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 내부자료

## II. 2010년 저출산 정책 예산의 주요 변화

### 1. 2010년도 예산 증가 주요 내용

-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등 보육수요가 큰 계층에 대한 신규 지원 확대
  - 소득하위 70%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52천명, 156억원)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18천명, 96억원)
  - 맞벌이 가정 0세아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하위 50% 이하 1,249명, 1일 11시간 주 5일, 월 58~69만원 지원, 44억원)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영유아 기준보육료 차등 지원  
(‘09년 : 813천명, 12,822억원 → ‘10년 : 870천명, 16,322억원)
  - ※ 기준보육료 차등지원 : 소득하위 50% 이하(100%), 하위 60%이하(60%), 하위 70%이하(30%)
  - ※ 소득 70% 초과하는 민간시설 이용 영아의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130천명)
  - 영유아 기준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09년 : 610천명→ ‘10년 : 761천명)
    - ※ 전액지원 대상 : 하위 50%의 만0~4세아, 하위 70%의 만5세아 및 둘째아 이상, 장애아동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진 체계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09. 6. 9 출범)』 활동 지원과 국민인식 개선 홍보 등 본격 추진 (‘09년 : 22 → ‘10년 : 51억원)
  
-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09년 : 1회 150만원, 17,539건 → ‘10년 : 150만원, 22,412건, 기초수급자는 회당 270만원) 및 인공수정시술비 신규 지원 (1회 50만원 범위내 총 3회까지, 4만건)
  
-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로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치료 접근성 제고(20개소→30개소, 30→61억원)

## 2. 2010년 예산 증가 상세 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 : 12,822억원 → 16,322억원 (27.3%증)

○ 내용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

- 보육료 지원 아동 : '09) 813천명 → '10) 870천명

※ 소득 70% 초과하는 민간시설 이용 영아에도 기본보육료 지원(130천명)

○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지원 대상 : '09) 610천명 → '10) 761천명

- 소득하위 50%의 만0~4세아, 소득하위 70%의 만5세아 및 둘째아 이상 아동, 장애아동

○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

- 소득하위70%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324 → 657억원 (102.7% 증)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 (114천명)

○ 지원단가 : 100천원/인·월

□ 보육돌봄서비스 : 3,399억원 → 3,495억원 (2.8%증)

○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

○ 세부명세

- 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아전담 등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

'09) 50,625명 3,229억원 → '10) 52,023명 3,286억원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450명 29억원 (전년동)

-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지원(월11만원) : '09)21,389명 141억원 → '10)27,344명 180억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 : 211억원 → 94억원(55.4% 감)

○ 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 세부명세

- 국공립 신축 10개소, 리모델링 19개소, 장애아전담 신축 1개소

- 증개축 20개소, 개보수 302개소, 장비비 245개소 지원

- 장애아보육시설 40개소 환경개선 지원

-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 151억원(전년동)
  -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102억원 (22천개소×연50~120만원)
  - 농어촌소재 및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 49억원 (4천개소 × 연240만원)
  
- 보육인프라 구축 등 : 197억원 → 157억원(△40억원, 20.3% 감)
  -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 (34억원)
  -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6억원) 및 보수교육(12억원)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56억원)
  - 중앙 및 지방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20억원)
  
- 저소득한부모가족 보증보험료지원, 이차보전 지원(사업 통합) : 5 → 7억원(2억원, 56.4% 증)
  - 복지자금융자 손실보전료 지원 : 171→ 352백만원(181백만원 증)
  - 복지자금융자 대출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 288→ 366백만원(78백만원 증)
  - ※ 복지자금 융자액 증가 : 30억원 → 40억원(10억원 증)
  
- 가족실태조사(신규) : 3억원(순증)
  - 가족실태조사 : 250백만원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 50백만원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225('09추경) → 201억원(△24억원, 10.7% 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지원 : 19,705백만원
    - 일시·긴급 돌봄 서비스 : 22,398 → 14,678백만원(7,720백만원 감, 34.4%감)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신규) : 4,421백만원
    - 돌보미 교육비 : 606백만원
  - 아이돌보미 사업관리 위탁 : 142 → 442백만원(300백만원 증)
    - 아이돌보미 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
    - 아이돌보미 사업 관리 : 142백만원(전년 동)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48('09추경) → 71억원(23억원, 47.9% 증)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 4,772 → 7,058백만원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4,475 → 6,084백만원
    -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추경사업) : 297백만원 → 미반영
  - 센터 다기능화 추진 : 974백만원 순증
    - 84백만원×23개소×50% = 966 + 계수조정 8

- 위기가족 역량강화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사업 통합) : 5 → 25억원(20억원, 517.5% 증)
  - 미혼모부자 지원망 운영 : 160 → 424백만원(현 6개소 운영→16개소 확대)
  -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 등 : 1,761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심리상담·치료지원 : 364백만원
    - 가족충격완충망 지원(10개 지역) : 300백만원
    - 취약가족역량강화(매뉴얼 제작·보급 및 사례관리 16개소) : 1,097백만원
    - ※ '09년도 취약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비”에 포함(313백만원)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위한 소송구조 및 홍보지원 325백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보조) : 257 → 245억원(5.0% 감)
  -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58,698 → 55,763명
  - 지원수준 : 572천원/2주(전년 동)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국민인식개선 : 22 → 51억원(128.1% 증)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 홍보 : 1,839 → 3,900백만원
  - 국민운동본부사업추진 지자체경상보조 : 48 → 800백만원
  - 인구교육활성화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 203백만원
  - 성과평가 및 워크숍 운영비 등 : 167백만원

### (3) 저출산 정책 사업별 예산 평가

-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출산 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에 편중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예산 지출
  - 저출산 정책의 중영역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은 “보육 교육비 지원 사업” (4조 667 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68.2% 차지
  -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투입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은 1조 8,225억원으로 저출산 전체 예산 중 3.1% 차지

- 보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업 2010년 예산은 2009년보다 오히려 감소

※ 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 (197억원→157억원, 20.3% 감소),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25억원→201억원, 10.7% 감소), 산모 신생아 도우미 (257억원→245억원, 5.0% 감소)

□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2010년 예산은 4조 870억원으로 저출산 정책 예산 중 6.9%에 그침

○ 동 분야의 87.8%에 해당하는 예산이 “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 (3조 5,867억원)에 지출되고 있으며.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규모의 예산 투입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사업에 24.9억원,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사회문화 조성에 475.4억원 투입

□ “모성·영유아 건강 관리 강화”와 “불임부부 지원” 등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예산은 총 4조 5,448억원으로 저출산 전체 예산 중 7.6% 차지

□ 대부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전체 저출산 정책 예산의 0.6% 차지

<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저출산 분야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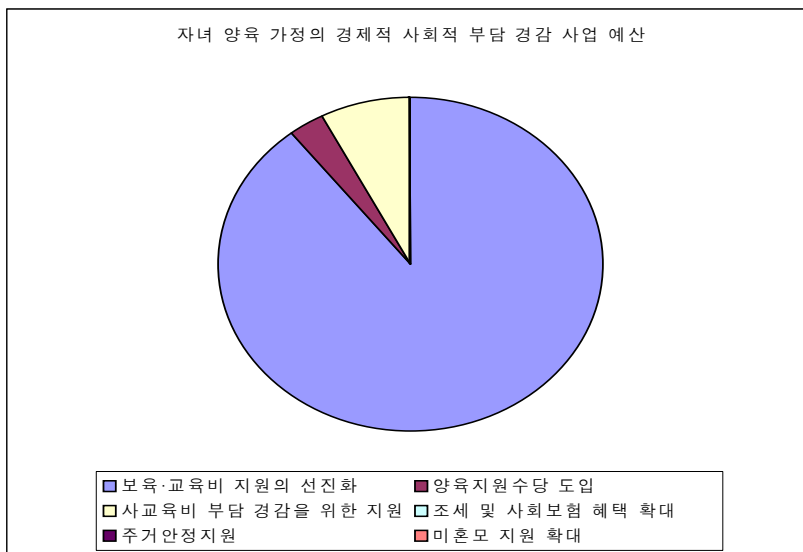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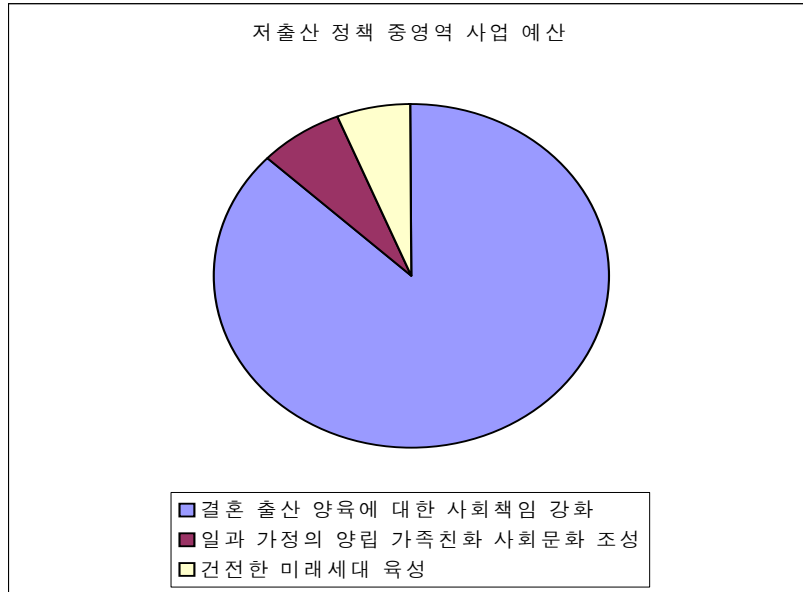
세부사업명	2009예산	2010예산(안)	2010년 비중
저출산 분야	47,676.7	59,633.4	100.0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0,415.7	51,873.2	87.0
신혼부부출발지원	1.0	0.0	0.0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35,137.0	45,505.9	76.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600.8	1,822.5	3.1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3,676.9	4,544.8	7.6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4,113.2	4,087.0	6.9
모성보호 강화	3,593.0	3,586.7	6.0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16.8	24.9	0.0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503.5	475.4	0.8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47.8	3,673.2	6.2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363.7	375.3	0.6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2,461.1	2,896.9	4.9



시스템 확립			
빈곤아동의 자활 자립 지원	323.0	401.0	0.7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 내부자료

[그림 ] 저출산 정책의 사업별 예산 비중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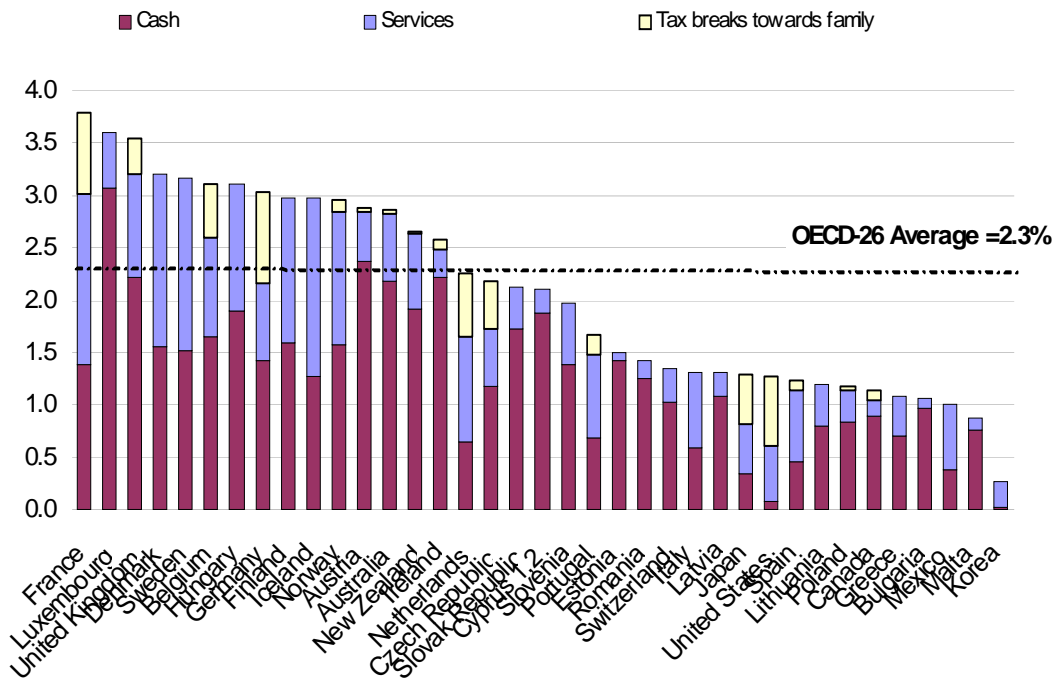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 내부자료

### Ⅲ. 저출산 예산의 OECD 국가 비교

□ 우리나라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총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 로서 OECD 국가 평균 2.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 (2005년)
- 경제 수준이 낮은 멕시코 (1.0%), 말타 (0.9%)와 동구권 국가인 헝가리 (3.1%), 폴란드(1.2%), 리투아니아(1.2%) 보다도 낮은 수준
  - 출산률이 높은 프랑스 (2.02명)와 스웨덴(1.91명)의 경우 가족 지원 정책 예산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와 3.2%로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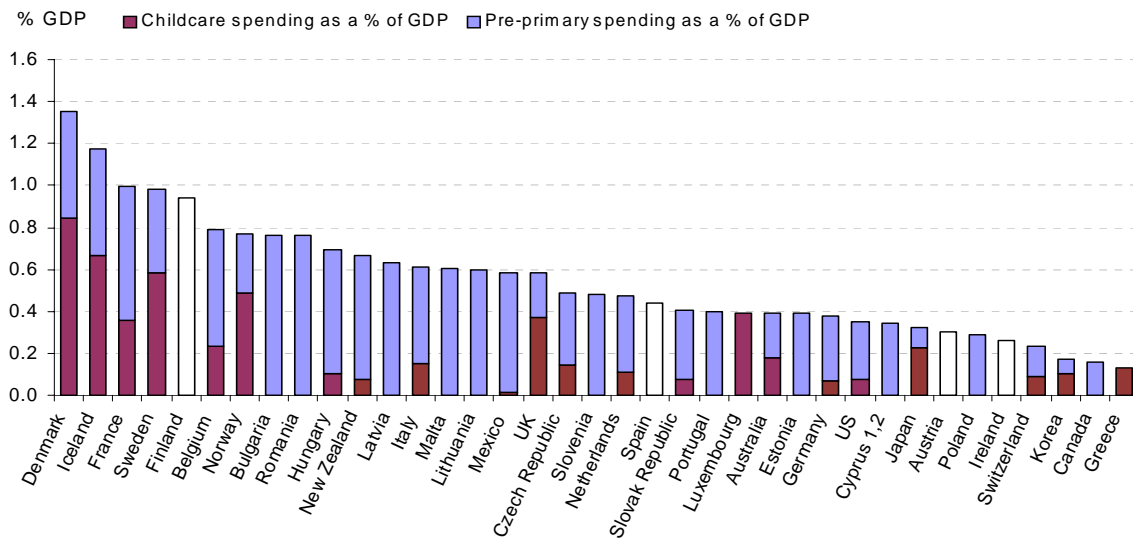
[그림 6] 가족 지원 정책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출처: OECD Family database (2009)

- 국내 저출산 정책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7%로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임
  - OECD 국가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9%
  - 출산률이 높은 프랑스 (2.02명)와 스웨덴(1.91명)의 경우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은 전체 GDP에서 약 1%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 7]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출처: OECD Family database (2009)

## IV. 저출산 정책 예산의 쟁점 사항 및 향후 과제

### 1. 주요 쟁점 사항

#### □ 저출산 정책의 예산 지출 우선 순위 재구성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 혹은 주어진 예산 투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예산 지출 구도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정책 효과성 극대에 한계점으로 작용함
  - 저출산 문제를 유발시킨 원인이 다양하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가치관을 함양하고 일 가정 양립 조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저출산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보육 지원에만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 (“엔젤플랜” 1995~2000) 출산률 회복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

※ 2007년 일본 합계 출산률은 1.34로 여전히 낮은 수준

- 최근 일본에서는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과 청년의 자립 지원을 저출산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취약 계층 위주의 지원으로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데 한계로 작용

- 저출산 정책의 지원을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는 계층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혹은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을 위주로 지원되고 있음

- 2010년 예산 편성시 보육료 지원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소득하위 70%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등 어느 정도 확대가 이루어 짐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세자녀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함

※ 30~44세 기혼 여성 중 3자녀 이상 비율은 11.3% (인구주택총조사, 2005)

□ 보육 교육비 예산 지원의 문제점

- 보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효과적인 보육 교육 지원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야간 보육, 시간제 보육, 주말 보육) 등 영유아 보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 특히, 보육의 사각 지대인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기본 보조금 제도 등 민간 보육 시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이루지 못함

□ 저출산 문제 심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미흡

-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어 미혼화, 만혼화를 가져와 저출산 문제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음에도 청년 자립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2. 향후 정책 과제

### □ 저출산 정책의 예산 총액 증가

- OECD 국가 중 출산률이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저출산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 교육비 지원에 국한되는 예산 지출의 왜곡성 유발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보육 교육비 지원 이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보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 육아 휴직 급여 현실화 등)이 절실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을 위한 전체적인 예산 증액 필요
- 저출산 문제는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 계층의 문제이므로 보편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책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무엇보다도 절실함

### □ 육아 휴직 급여 현실화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 휴직 제도를 활성화 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과 아울러 여성의 육아에 따른 기회 비용 보상이 절실함
- 현재 육아 휴직 활용도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여성의 기회 비용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육아 휴직 급여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음
  - ※ 산전후 휴가 사용자 중 육아 휴직 사용 비율 42.5% (2008)
- 육아 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 육아 휴직 급여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스웨덴의 경우 부모 보험을 통해 고용주 기여금 85%, 정부 15%의 부담으로 육아 휴직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독일은 2005년 스웨덴식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장분담금이 아닌 일반 조세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 미혼화, 만혼화를 방지하기 위한 청년 자립 지원 정책 강화

- 현재 저출산 정책은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가정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청년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결혼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사업 모두 2010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 기존의 매칭 서비스 지원, 주택 공급에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요청됨

□ 모자 보건, 불임 지원 등 여성 생식 보건에 대한 지원 강화

- 최근 만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액의 불임 진단 비용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 현재 체외 수정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우 한정적인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자녀 낳기를 원하고 있으나 낳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임 부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최근 고령 임신의 증가에 따라 미숙아, 조산아, 임신 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모성 보호를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필요

□ 한부모 가정, 미혼모,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

- 특히 미혼모의 경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

-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기초장애연금 대안의 쟁점  
비교 및 분석**

# 1. 서론

- 최근 발표된 201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10년 일반회계 기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2009년 5,463억원 대비 18.5% 증가한 6,475억원으로 집계되었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97.3%인 6,304억원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배정되었으며, 2.7%인 나머지 172억원이 장애인 재활지원에 배정되었음.
    -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2010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장애연금으로서 1,520억원(6개월분)이 배정되었음. 기초장애연금 지급으로 인해 기존에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폐지되며, 이로 인해 내년도 장애수당 예산은 2008년 보다 37.6% 줄어든 1,792억원이 배정되었음.
  
- 그러나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장애연금의 개요는 지난 7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안보다 지급 규모 및 지급액 등의 측면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예고 후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2010년 예산안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정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화될 국회 차원의 관련 법률안 심사를 거쳐야 함.
    - 기초장애연금 관련 법률로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은 지난 4월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이 유일하나, 조만간 부처 협의를 거친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이상의 두 법률안을 절충한 형태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 할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이들 3개 법률안의 병합 심사가 불가피함.
  
- 기초장애연금의 최종 설계 및 2010년 예산안 확정외 또 다른 변수는 기초장애연금 이슈를 본격화하고 입법 활동 및 정부 법안 반대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공투단)」으로 대표되는 장애계의 향후 대응임.
  - 지난 7월에 입법예고된 정부 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펴 온 장애계가 당초 정부 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10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안의 철회를 목표로 대규모의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이렇듯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기초장애연금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장애연금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필요함.
  - 본 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실태와 기존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의 사례 및 그리고 대안으로서 관련 3개 법률안의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 2.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실태

□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24만여명으로 인구의 4.5%에 해당됨.

- 18세 이상 1~2급 등록장애인은 51만명으로서 18세 이상 전체 등록장애인의 23.4% 임.

〈표 1〉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천명)

연도	'02	'03	'04	'05	'06	'07	'08
우리나라 인구	48,230	48,387	48,584	48,782	48,992	49,269	49,540
등록장애인	1,294	1,454	1,611	1,777	1,968	2,105	2,246
인구 대비 비중	2.7%	3.0%	3.3%	3.6%	4.0%	4.3%	4.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 현황

〈표 2〉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

(단위: 천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인원	2,174	179	330	377	323	447	518
비율	100.0%	8.2%	15.2%	17.3%	14.8%	20.6%	23.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 현황

□ 2008년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370천원)의 54.0% 수준에 불과함.

〈표 3〉 2005년 및 2008년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비교

(단위: %, 명, 만원)

구분	2005년	2008년
전국추정수	1,944,791	2,136,526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A)	157.2	181.9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B)*	291.9	337.0
전국대비 장애인가구 소득수준 (A/B)	53.8	54.0

자료: 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9

2)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8.

- 2008년 현재 장애인 개인 월평균 소득은 63만원이며, 특히 1~2급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39만 5천원으로서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58만 4천원보다 낮은 수준임.
- 이는 중증장애인이 소득 활동이 어렵고 생활실태가 열악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4〉 등록 장애인 등의 월 평균 개인 소득(2008)

구분 (단위: 만원)	등록 장애인		
	전체	1-2급	3-6급
월 평균 개인 소득	63.0	39.5	71.2
<hr/>			
65세 이상 노인			
58.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장애인 상대빈곤율은 39.8%로서 비장애인 상대빈곤율 15.7%에 비해 약 2.5배 수준이며, 주요 OECD 회원국 평균 18%와 비교할 때도 2배 이상 높음.

〈표 5〉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상대빈곤율 비교

(단위: %)

구분	노르웨이 (2004)	폴란드 (2004)	스위스 (2002)	호주 (2003)	룩셈부르크 (2004)	스페인 (2004)	영국 (2004)	OECD (2004)	한국 <sup>1)</sup> (2005)
상대 빈곤율	11	19	18	45	16	24	24	18	40

주: 1)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가처소득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적용

- 2008년 현재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총 지출액은 155만 5천원으로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290천원)의 67.9% 수준임.

〈표 6〉 2005년 및 2008년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2005년	2008년
전국 추정수	1,944,791	2,137,769
장애인가구 월평균 지출(A)	134.5	155.5
전국 가구 월평균 지출(B)*	203.5	229.0
전국대비 장애인가구 지출 수준 (A/B)	66.1	67.9

자료: 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9.

2)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8.

-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34.4%이며, 그 외 공무원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 비율은 3.1%로서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가 37.5%에 불과하였음.

〈표 7〉 가입한 연금 종류

(단위: %, 명)

구분	전체
미가입	62.1
국민연금	34.4
공무원연금	1.4
사립학교 교원연금	0.3
군인연금	0.5
보훈연금	0.9
개인연금	0.3
기타	-
계	100.0
전국추정수	2,054,52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는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바라는 가장 큰 욕구라는 것이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의료보장(30.1%),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조사에서는 소득보장(48.9%), 의료보장(19.0%), 주택보장(4.0%)의 순으로 나타났음.

### 3.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문제점

-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의 낮은 급여 수준 및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23.2%에 불과함('08년 기준)
  - 장애연금 수급자는 72천명으로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3.3%, 장애수당 수급자는 433천명으로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19.9%
  - 추가비용 보전급여 성격인 장애수당\*의 경우 장애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추가비용 소요는 더 많고\*\*,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소득보전 필요성이 보다 큼

\* 기초수급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수급·차상위 경증 3만원 지급

\*\* 중증 장애인 월 평균 추가비용 208천원, 경증은 138천원('08)

○ GDP 대비 장애 급여 지출 비중은 0.06%로서('07), 유사한 GDP 규모였던 1990년의 호주 0.51%, 이탈리아 1.69%에 비해 현저히 낮음(OECD 평균 3~5%, '05)

〈표 8〉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단위:%)

구분	GDP 대비 % 장애급여 지출 비중		
	1990년	1999년	2005년
호주	0.51	0.86	1.1
오스트리아	1.30	1.75	na
벨기에	1.32	1.06	na
캐나다	0.46	0.67	na
덴마크	2.31	2.28	2.2
프랑스	0.73	0.83	na
독일	1.05	1.01	na
이탈리아	1.69	0.95	na
한국	0.00	0.02	0.03
멕시코	0.09	0.20	na
네덜란드	3.42	2.65	2.4
노르웨이	2.23	2.36	2.25
폴란드	2.39	3.28	3.0
포르투갈	1.32	1.03	na
스페인	0.96	1.24	1.2
스웨덴	2.03	2.05	na
스위스	1.05	1.83	2.0
터키	0.03	0.07	na
영국	0.88	1.27	1.5
미국	0.56	0.71	na
OECD	1.22	1.30	1.3
OECD(17) <sup>3)</sup>	1.42	1.52	na
EU(11)	1.55	1.46	na
Non-EU(9)	0.81	1.11	na

주: 1) 장애급여는 기여(소득과 관련된)·무기여 장애급여를 의미함.

2) 한국, 멕시코, 터키 제외

3) na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임.

자료: OECD,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2003;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vol. 1, 2. 3. 2006, 2007. 2008.

- 또한,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 강화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차상위계층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수당 또한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까지만 지급되고 있음.
- 이는 차상위계층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립보다는 수급자 계층으로 유도하는 역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4.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 모든 OECD 회원국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전 급여와 추가비용 급여를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소득보장 전략을 조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있음.

##### □ 소득보전 급여 체계

-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이 유발하는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 선진 외국은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 전략을 결합하여 운용하고 있음.
  - 우선,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기회의 상실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전략으로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3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 즉, 1차 안전망으로서 기여에 기반한 장애연금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2차 안전망으로서 근로활동 연령대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또는 기여식 장애연금제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3차 안전망(최후 안전망)으로서 장애연금 또는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 즉 근로능력 평가에서 손상 정도가 덜하여 제외된 경증 장애인 - 중 자산조사 요건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부조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이러한 3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2차 안전망, 즉 기초장애연금이나 장애부조 없이 1차 안전망(장애연금)과 3차 안전망(일반부조)만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일반부조는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합형 사회부조이지만, 장애인,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보다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부조를 운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추가비용 급여 체계

○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소득보전 급여와 별도로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 급여제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주요 선진 외국은 각 국가의 사회정책 전통에 따라 자산조사 급여 또는 비자산조사 급여 형태의 다양한 추가비용 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영역 중 보호간병(care)과 이동(mobility)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추가비용 급여가 보전하고자 하는 주요 지출 영역임.
- 한편,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기여식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비용 급여는 조세가 아닌 연금 재원을 통해 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서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장애연금 수급자의 추가비용 급여는 연금 재원에 의한 별도의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9〉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종류	유형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소득보전 급여	장애연금	○	×	○	○	○	○	×	○	○
	장애부조 (기초장애연금)	○	○	○	○	○	○	○	○	○
	일반부조	○	○	○	○	○	○	○	○	○
추가비용 급여	비자산조사급여	×	○	○	○	○	○	○	○	○
	자산조사 급여	○	×	○	○	○	×	○	○	○

종류	유형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호주	일본	한국
소득보전 급여	장애연금	○	○	○	○	○	○	×	○	○
	장애부조 (기초장애연금)	○	×	○	○	○	○	○	○	×
	일반부조	○	○	○	○	○	○	○	○	○
추가비용 급여	비자산조사급여	○	○	○	○	○	×	○	×	×
	자산조사 급여	×	×	○	×	○	×	○	○	○

주: 소득보전급여 중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을 의미하며, 장애부조(기초장애연금)는 선천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장애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에게 조세(사회보험료)를 통해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함. 또한 일반부조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손상 정도가 덜하여 장애부조(기초장애연금)를 수급할 수 없는 경증 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함.

## 4. (기초)장애연금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률(안) 주요 내용

### □ 지급 대상 및 범위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1급과 2급 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장애연금액 수준

- 장애연금액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되 합산하여 지급
- 기본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로 함

〈표 10〉 기본급여액 추계

(단위: 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8.8	9.1	9.2	9.4	9.5	9.6

※ 향후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 1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제도 모형

구분	현행	향후('10.7월~)	
추가비용 보전	장애수당	부가급여	
소득보전	-	기본급여	(기초노령연금)
	연령	18세 ~ 64세	65세

## 5. 대안 비교 및 분석

### 가. 법률안 제출 현황

- 18대 대선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의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1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곧 2개 법률(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임.

-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등 장애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이 4월 국회 제출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법(안)」을 7월 말 입법 예고
    - 보건복지가족부 법률안 시행을 위한 예산 협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이 복지부 안을 일부 수정한 독자적인 안을 견지하고 있음을 볼 때, 총 4개의 안이 경쟁하고 있는 상태임.
- \* 2010년 예산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예산이 배정되었음.

□ 장애계 안과 보건복지가족부 안이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에서 독자적 구조를 가지고 상호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윤석용 의원 안과 기획재정부 안은 각각 장애계 안과 복지부 안에서 일부 후퇴한 안임.

#### 나. 쟁점별 비교

□ 지급 대상자 기준: 장애 기준

- 박은수 의원 안의 지급 대상자 기준이 경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체 장애인으로서 가장 포괄적이며, 이어서 윤석용 의원 안이 1~3급, 정부 안은 1~2급 및 3급 중복으로서 가장 협소
  - 장애인연금 수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의학적 손상 중심의 현행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근로능력 유무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의사의 1차적 판정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짜 장애인’, ‘등급 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행 판정체계는 신뢰성 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안들이 현행 장애판정체계를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지급 대상을 전 장애등급으로 확대한 장애계 안은 합리성이 더욱 결여된 안으로 평가
- 원칙적으로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아닌 근로능력 평가를 반영한 새로운 장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함.
  - 장애판정체계를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 안과 같이 현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직업적 중증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기초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



- \* 프랑스, 스페인은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무기여 방식의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나라임.
- 현행 판정기준을 보완한 새로운 기준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초장애연금 신청시 모든 신청자로 하여금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수급 요건에 포함하여 현행 장애판정체계를 보완
- \* 기초장애연금 신청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중증장애 심사 업무와 동일하게 장애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0년에 70.5억원이 배정되었음.

□ 지급 대상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박은수 의원 안, 윤석용 의원 안 및 보건복지가족부 원안 등이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를 지급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2010년 예산안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안이 반영되었음.
- 기초노령연금의 최초 도입 시점에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기초장애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단계적 지급 대상 확대 및 대통령 공약사항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명시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 소득보전 급여(기본 급여) 지급액

- 윤석용 의원 안이 최저임금의 30%로 가장 지급 수준이 높으며, 이어서 박은수 의원 안이 최저임금의 25%, 정부 안은 기초노령연금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가장 낮음.
- 장애계와 보건복지가족부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급액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기초장애연금의 지급 기준으로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장애연금 지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임.
- 그러나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들 국가들이 기초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거의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외국 사례를 볼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설정한 박은수 의원 안과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지급액을 설정한 복지부 안이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 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및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을 통한 기초연금제도로의 개편 등을 고려할 때 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0년 7월 시행을 위한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기본급여는 원안대로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 추가비용 급여(부가 급여) 지급액

- 박은수 의원 및 윤석용 의원 안은 기존 추가비용 급여인 장애수당이 독자적 제도로서 운용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 안은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변경하여 통합 장애급여의 운용을 계획
  - 특히 박은수 의원 안은 장애수당이 추가비용을 100% 보전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확충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유일하게 부가급여의 지급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보장 수급자 15만원, 차상위 수급자 12만원, 차상위 초과 수급자 1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 기획재정부는 기초보장 수급자 6만원, 차상위 수급자 5만원(차상위 초과 수급자 지급 제외)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할 경우 기획재정부 안도 현행보다 높기는 하지만 차상위 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 도입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침.
- 복지부 안의 경우 차상위 초과 수급자의 급여가 과도하게 신설 인상(20만원) 되는 문제점이 존재

□ 타 제도와의 관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박은수 의원 안 및 윤석용 의원 안은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도 각각 연금액의 70%, 6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 원안은 연금액의 100% 소득 인정을 적용하여 부가급여 인상분(2만원) 외에는 실제적 증액 효과가 없도록 하였음. 그러나 201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기획재정부 안의 경우 부가급여의 수준을 당초 복지부 원안 보다 크게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15만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14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기초장애연금 수급을 통해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장애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
  -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각각 연금액(기본급여)의 70%와 60%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박은수 의원 안과 윤석용 의원 안은 노인·한부모 등 타 빈곤층과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움. 결국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되, 소득보전 급여인 기본급여의 경우에는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에 100% 포함시키고 추가비용 급여인 부가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원안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

-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기초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는 계속적으로 기초장애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규로 등록한 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도록 함.

〈표 12〉 기초장애연금 관련 대안 비교

구분	장애계·민주당 (박은수 의원 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안)	보건복지가족부 원안	2010년 정부 예산안 (기획재정부 안)
수급요건	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장애등급	1~6급	1~3급	1~2급 및 지적 또는 자폐성 3급으로서 다른 장애를 동반한 자
	소득 및 재산	18세 이상 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 (52.6%)
지급액 (2010년)	- 1~2급: 최저임금액의 25%(월 25만원) - 3~6급: 중증 연금액의 50%(월 12.5만원)	최저임금액의 30% (월 27만원)	- 기본급여: 기초노령연금 A값의 5%(9.1만원) -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신규 10만원	- 기본급여: 기초노령연금 A값의 5%(9.1만원) -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타제도와 의 관계	장애수당	현 장애수당 존치 *추가비용 100% 보전 필요	현 장애수당 존치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흡수 * 경증장애수당 존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는 연금액의 70% 지급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는 연금액의 60% 지급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도 연금 지급하나, 기초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므로 실익 없음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의 차액 지급	특별한 언급 없으나 박은수 의원 안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	병급 불가 * 기본급여는 기초노령연금액과 동일
대상자 수	1,522천명	620천명	407천명	326천명
추가예산* (총 예산)*	2조 3,731억원 (2조 5,523억원)	-	4,577억원 (6,369억원)	441억원 (3,311억원)

\* 기초장애연금 도입(2010년 7월)으로 실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 기존 장애수당 지급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

## 6. 결론

- 기초장애연금 도입은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제고하고 자립을 촉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기회 제공
  -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은 다른 OECD 회원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상호보완적 관계의 다층의 소득보전 급여와 독립적인 추가비용 급여 제도를 갖춘 완성된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의 틀을 구축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옴.
- 주요 쟁점별로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있으나, 제도 시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를 시행하여야 함.